

주주여러분께

신 주 발 행 공 고

상법 제 416 조에 의거 2023 년 08 월 11 일 및 2023 년 08 월 30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--- 다 음 ---

■ 유상증자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18,000,000주 (1주당 액면가액 : 500원)
2. 신주의 발행방법 :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
3. 자금조달의 목적 : 운영자금, 채무상환자금 등
4. 신주의 발행가액 : 1,985원(최초 이사회 결의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가액이며,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예정 발행가액과 확정 발행가액은 상이할 수 있음)
 - (1)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,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,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%를 적용한다(단,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).
 - (2) 2차 발행가액은 : "구주주"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,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%를 적용한다(단,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).
 - (3)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. 다만, 「자본시장법」 제165조의6 및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 5-15조의2에 의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%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%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(단, 호가 단

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).

* 1차 발행가액 = [기준주가 x (1-할인율)] / [1+(증자비율 x 할인율)]

* 2차 발행가액 = 기준주가 x (1-할인율)

* 확정 발행가액 = Max{Min[1차 발행가액, 2차 발행가액],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%}

5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23년 09월 18일

6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3년 09월 19일 ~ 09월 25일

7. 신주의 배정방법

(1) 구주주 청약 :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(이하 "구주주"라 한다)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.473616608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(단, 1주 미만은 절사함)로 하고,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. 단,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,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,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.

(2) 초과청약 : "구주주"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, 실권주를 "구주주" 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가 초과청약(초과청약비율 : 배정 신주 1주당 0.2주)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,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.(단,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% 배정한다.)

(3) 일반공모 청약 :

(가) "구주주"에 대한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,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%를 배정하고,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%를 배정한다. 나머지 65%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(집합투자업자 포함)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.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의 5%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의 30%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의 65%에 대한 청약 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. 다만,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,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.

(나) "일반공모" 청약결과 "일반공모"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.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.

(다) "일반공모" 청약결과 "일반공모"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되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기로 한다. 단, 대표주관회사는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50,000주 이하(액면가

500원 기준)이거나,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.

8. 신주의 청약증거금 : 청약금액의 100%
9. 확정 발행가액 결정예정일 : 2023년 10월 25일
10. 신주의 청약기간
 - (1) 구주주의 청약기간 : 2023년 10월 30일 ~ 2023년 10월 31일 (2영업일)
 - (2) 일반공모 청약기간 : 2023년 11월 02일 ~ 2023년 11월 03일 (2영업일)
11. 주금납입일 : 2023년 11월 07일
12. 주금납입처 : 신한은행 삼성역 기업금융센터지점
13. 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23년 01월 01일
14. 신주 상장예정일 : 2023년 11월 20일
15. 대표주관회사 : 한양증권 주식회사
16. 청약사무 취급처
 - (1) 구주주 중 일반주주(기존 '실질주주'):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·지점 및 "대표주관회사"의 본·지점
 - (2)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(기존 '명부주주'): "대표주관회사"의 본·지점
 - (3) 일반공모 청약자 : "대표주관회사"의 본·지점
17.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
 - (1)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: 2023년 10월 12일 ~ 2023년 10월 18일 (5영업일)
 - (2)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: 한양증권 주식회사
18. 기타사항
 - (1)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,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.
 - (2)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,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.
 - (3)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.
 - (4)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 - (5)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